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58

발의연월일: 2021. 1. 5.

발 의 자:권명호·임이자·송언석

김희국 · 정희용 · 최춘식

김형동 · 정운천 · 정진석

김기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,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,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

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3,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의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
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6(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) ① 정부는 소상공인 중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2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7(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) ① 제22조의6에 따른 피해

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·대상·범위·금액·방법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
- 2.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임원
- 3.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원
- 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1항제17호의3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

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	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	
여 사용할 수 있다.	
1. ~ 17의2. (생 략)	1. ~ 17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7의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</u>
	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
	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
	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
	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
	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
	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
	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18. ~ 23. (생 략)	18. ~ 2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	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6(감염병 재난에 따른
	지원 특례) ① 정부는 소상공
	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	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
	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
	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

<신 설>

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 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 상공인에 대하여는 제22조의7 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 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 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7(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) ① 제22조의6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·대상·범위·금액·방법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속으로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기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

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
- 2.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 회에서 추천하는 임원
- 3.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

   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

   임원
- 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
- 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